



국토교통부

# **보도설명자료**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 일시 | 2023. 3. 16.(목)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 부서 | 기술안전정책관<br>기술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이성훈(044-201-3549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나귀용(044-201-3550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건설정책국<br>건설산업과   | 책임자 | 과 장 우정훈(044-201-3538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팀 장 홍 철(044-201-4990)<br>사무관 임희엽(044-201-3542) |
| 보도일시  |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**국토부의 ‘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’ 은 작업중지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**

< 보도 내용 (한겨레, 3.16) >

◆ “안전 버팀목 ‘노동자의 작업중지권’ 무용지물 됐다”

-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은 작업중지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, 그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13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에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업무수행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(이하 세부기준)을 마련했습니다.

- 세부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\*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

\*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. (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)

- 다만, 세부기준에서는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를 불성실 업무 유형의 하나로 명시한 것으로,

-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의도적으로 작업 중단을 반복하는 등 태업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, 사업자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,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.

